

광주고등법원 2024. 5. 23 선고 2023나26959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]

재판경과

광주고등법원 2024. 5. 23 선고 2023나26959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23. 10. 26 선고 2023가합50672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문중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주로펌

담당변호사 방영철

피고, 항소인 1. E

2. F

3. I

4. K

5. L

6. M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현중

변론종결 2024. 4. 25.

판결선고 2024. 5. 23.

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3가합50672 판결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원고에게, 피고 E, F, I은 각 77,993,500원, 피고 K, L은 각 64,994,580원, 피고 M은 129,989,1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. 1. 1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들이 항소하면서 주장하는 사유는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거의 같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고 “2020. 1. 7. 임시총회”를 “2020. 1. 19. 임시총회”로 일괄하여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2. 추가하는 부분

가. 피고들 주장의 요지

원고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유사단체이며,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원고의 총회는 소집통지를 누락하는 등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고,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했다고 볼 수 없고, 피고 M이 강제경매로 취득한 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.

나. 판단

1)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 및 갑 제1, 3, 7, 10, 2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, ① ‘AH’이라는 호를 사용한 Q파 15세손 R이 AI마을에 정착하게 되어 A문중회라는 원고의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, ② 피고들 중 F, I, E은 이 사건 관련 임야에 관하여 공탁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, 그 사실을 한국토지공사에 통지한 점, ③ 원고의 회계장부는 이 사건 관련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인 1989년도부터 작성되었고, 1993년 12세손 AJ 묘지 제초작업이 진행된 사실, 정기총회 등에 관련된 비용이 지출된 사실 등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는 고유의미의 종중에 해당하고, 을 제10 내지 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, 또한 원고가 급조된 종중유사단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2) 원고의 총회결의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

가) 2020. 1. 19. 임시총회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

갑 제1,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, ① 원고는 2020. 1. 7.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한 소제기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임시총회소집통지서를 종원명부를 근거로 종원을 특정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, 그와 같은 사항을 유선으로 알린 점, ② 원고가 등기우편으로 송부한 종원목록에는 피고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, ③ 광주 북구 AN마을 노인정에서 2020. 1. 19. 16:30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총 종원 344명 중

44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2020. 1. 19.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) 2021. 4. 16. 정기총회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

갑 제1, 9호증의 각 기재, 제1심 증인 AA의 증언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, ① 원고의 정기총회는 시제일인 매년 음력 3월 5일 이루어진다고 문중규약에 기재되어 있고, AA도 동일한 취지로 증언한 점, ② 원고는 시제일인 2021. 4. 16.(음력 2021. 3. 5.) 11:00 공동선조인 R의 묘소가 있는 이 사건 임야에서 시제를 개최하였고, 시제 이후 2020. 1. 19. 임시총회의 결의사항을 모두 추인하기로 결의가 이루어진 점, ③ 위와 같은 정기총회에 19명의 종원들이 참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2021. 4. 16. 정기총회에 관하여 종원에게 소집통지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2020. 1. 19.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2021. 4. 16. 정기총회 결의가 유효하다.

피고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개최된 정기총회의 날짜와 문중규약에 기재된 날짜가 다르므로 위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8다카11602 판결을 적용할 수 없고, 2021. 4. 16. 정기총회는 소집통지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나, 원고의 정기총회는 원고가 정관을 제정하기 전부터 매년 음력 3월 5일에 행해진 사정 및 1995년에 이를 문중규약 제10조에 명시한 사정 등이 인정되므로, 원고 종중원들은 별도의 소집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관례적으로 음력 3월 5일이 정기총회일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,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정기총회일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원고의 정기총회일이 매년 변동됐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)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갑 제1, 3, 7, 10, 2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, ①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일관되게 ‘선산’, ‘Y선산’으로 명기하고, 이에 대한 재산세를 부담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, ② 피고들 중 F, I, E은 이 사건 관련 임야에 관하여 공탁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, 그 사실을 한국토지공사에 통지한 점, ③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

내용의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AQ, U, V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4) 피고 M이 강제경매로 취득한 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

일반적으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, 따라서 명의수탁받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[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8다259374(본소), 2018다259381(반소) 판결, 대법원 1992. 6. 9. 선고 91다29842 판결 등 참조].

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피고 M이 이 사건 임야 중 AP 명의의 1/18 지분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 갑 제7, 10, 2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, ① 피고 M의 경매신청으로 2019. 8. 20.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,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M이 2020. 1. 23. 위 지분에 관한 매각을 받아 2020. 1. 30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, ② 피고 M은 이 사건 임야 중 1/18에 관한 명의수탁자였고, AP의 친동생인 점, ③ 원고는 2019. 9. 3.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결정(2017카단2101)을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점, 이 사건 관련 판결의 내용,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관련 임야의 수용절차 등을 더하여 보면, 피고 M과 AP은 원고의 허락 없이 AP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 1/18지분에 관하여 피고 M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, 이는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해당한다.

따라서 피고 M이 AP의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하고,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그 해지의 효력은 피고 M이 경락받은 AP 지분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M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성주, 판사 최창훈, 판사 김진환